

8. 土地區劃整理事業法施行規則中 改正令

建設部令 第549號 1994. 3. 2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시행지구 및 공구의 설정란의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시행지구에 진입도로가 없어 인근의 도로등과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200미터의 범위안에서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지역을 시행지구에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의 보류지책정란의 제3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간선도로외의 지구내 도로를 배치할 때에는 가급적 주간선도로에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상호간,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 집산도로 상호간, 집산도로와 국지도로 또는 국지도로 상호간에 연결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회전차선·변속차선 또는 교통섬 및 입체교차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

택지에는 간선도로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의 공사계획란의 제2호라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행지구안의 급수를 위한 상수도 배수관설치비용은 당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해 시행지구와 그외 지역의 급수를 함께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의 설치비용은 그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2) 시행지구안의 하수를 배수하기 위한 하수관 거의 설치비용은 당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해 시행지구와 그외 지역의 하수를 함께 배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하수관 거의 설치비용은 그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별표]의 공사계획란의 제4호중 “건설공사시공감리규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신청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사업계획의 기준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제3조)

현행		개정안	
구분	계획작성의 기준 및 방법	구분	계획작성의 기준 및 방법
시행지구 및 공구의 설정	1. (생략) 2. 시행지구 및 공구 가. ~라.(생략) (신설)		1. (생략) 2. 시행지구 및 공구 가. ~라.(생략) 마. 시행지구에 진입도로가 없어 인근의 도로등과 연결되는 주진입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200미터 범위안에서 주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지역을 시행지구에 포함하여야 한다.
보류지책정	1.~2. 3. 공공시설용지 가.(생략) (1) 간선도로외의 지구내 도로를 배치할 때에는 간선도로와의 교차가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택지에는 간선도로를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보류지책정	1.~2.(현행과 같음) 3. 공공시설용지 가.(현행과 같음) (1) 간선도로외의 지구내 도로를 배치할 때에는 가급적 주간선도로에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상호간,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 집

현행		개정안	
구분	계획작성의 기준 및 방법	구분	계획작성의 기준 및 방법
	<p>(2)~(3) (생략)</p> <p>1. (생략)</p> <p>2. 공공시설의 설치 가.~다.(생략)</p> <p>라. 상하수도</p> <p>(1) 상수도의 배수관설치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수도사업특별회 계에서 부담하도록 하 여야 한다.</p> <p>(2) 공공하수도의 설치비 용은 당해 지방자치단</p>		<p>산도로와 국지도로 또 는 국지도로로 상호간 에 연결이 되도록 하여 야 하고, 필요시에는 회전차선·변속차선 또 는 교통섬 및 입체교차 시설등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택지에 는 간선도로를 설치하 여서는 아니된다.</p> <p>(2)~(4) :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공공시설의 설치 가.~다.(현행과 같음)</p> <p>라. 상하수도</p> <p>(1) 시행지구안의 급수를 위한 상수도배수관설치 비용은 당해 사업시행 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해 사업시행지구와 그외 지역의 급수를 함 께 하기 위하여 설치하 는 배수관의 설치비용 은 그 비율에 따라 분 담한다.</p> <p>(2) 시행지구안의 하수를 배수하기 위한 하수관</p>

현행		개정안	
구분	계획작성의 기준 및 방법	구분	계획작성의 기준 및 방법
	<p>체의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p>		<p>거의 설치비용은 당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해 시행지구와 그외 지역의 하수를 함께 배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하수관거의 설치비용은 그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p>
공사계획	<p>다.(생략) 3.~4.(생략) 1.~3.(생략) 4.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건설공사감리규정을 준용하여 공사를 시공감리하도록 하여야 한다.</p>	공사계획	<p>다.(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4.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을 준용하여 공사를 시공감리하도록 하여야 한다.</p>

□ 개정이유 □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안의 상·하수도의 급수관 및 배수관과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종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시행지구안의 간선도로배치계획만 포함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지구와 연결되는 진입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개

설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진입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200미터이내의 진입로는 사업시행지구에 포함시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함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와 동시에 진입도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함(별표).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안에 간선도로를 배치함에 있어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교차점은 가급적 적게하되,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는 주간선도로에 직접 교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별표).

다. 종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안의 상·하수도의 급수관 및 배수관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상·하수도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해당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을 야기하여 왔으므로 앞으로는 상·하수도의 급수관 및 배수관의 설치계획을 당해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 함(별표).
(건설부 제공)

내몸같이 깨끗하게 내집같이 아름답게